



가정통신문 [제24-64호]

2024 학교생활기록부 학생/ 학부모 안내 자료

교무기획부
032)627-6963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본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·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(고입)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·관리하고 있습니다.
이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요약하여 안내를 드립니다.

I 학교생활기록부란

-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및 학습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학생 종합 성장 보고서입니다.
-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·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기록입니다.
-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·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관리되는 법정 장부입니다.

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학부모의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'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(<https://star.moe.go.kr>)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II 기재 항목



III

유의 사항

- 재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(유예, 면 등)에 대해 학생/학부모 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[민원]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(재학생: 당해 학년도, 학업중단학생: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)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,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, 자유학기 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,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
-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 방법

[나이스 대국민서비스] - [학부모서비스] - [인천광역시교육청] - [학교생활기록부]

-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,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'학생부 대필'은 위법 행위입니다. 시도교육청 현장 점검 시 서술형 항목 기재 내용을 학생에게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.
- 학생 및 학부모가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.

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
10. 각급학교의 입학·성적·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·조작하도록 하는 행위

□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

① (접속방법) '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(<https://star.moe.go.kr>)' 검색 후 클릭

② 주요 메뉴 구성

구분	메뉴 종류	대상	내용
민원 상담	민원 및 질의사항	회원	▶ (지원포털 경로) '상담·고충' - 'Q&A' ▶ (서비스내용) 학생부 관련 민원 및 질의사항 게시판
	1:1 채팅 문의	회원·비회원	▶ (지원포털 경로) 포털 내 오른쪽 하단의 '1:1 채팅 문의' 클릭 ▶ (서비스내용) 현재 문의 접수만 가능(평일 오전9시~오후5시)
정보 제공	기재요령 설명영상	회원·비회원	▶ (지원포털 경로) '학교생활기록부란' - '기재요령 설명영상' ▶ (서비스내용) 학생부 항목별 기재요령 설명영상(15종)
	학생부 관련 법령·규정	회원·비회원	▶ (지원포털 경로) '자료실' - '법령·규정' ▶ (서비스내용) 초·중등교육법('98~'23),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('15~'24),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'08~'24)
신고	학생부 클린센터	회원	▶ (지원포털 경로) '상담·고충' - '학생부 클린센터' ▶ (서비스내용) 학생부 작성·관리의 부정행위 목격 신고 게시판

2024. 4. 23.

인천재능중학교장